

수출 이행여부 신고서

[illegible]

「자동차관리법」 제13조제8항, 「자동차등록령」 제32조 및 「자동차등록규칙」 제41조에 따라 수출 목적으로
 말소등록한 자동차의 수출 이행 여부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이
이
이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1. 자동차별 수출 이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(수출을 이행한 자동차만 해당합니다.) 1부 - 수출을 이행하지 못하여 신규등록 신청 또는 폐차 요청을 한 경우에는 신규등록 관청 또는 자동차해체 재활용업자가 말소등록을 한 관청으로 통보합니다. ※ 자동차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덧붙이시기 바랍니다.	수수료
		없음

유의사항

- 수출 목적으로 말소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수출이행여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: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
- 수출 목적으로 말소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수출하지 않은 경우로서 신규등록 신청을 하지 않거나 폐차 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: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